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 제2024-114호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5. 17. ~ 5. 3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4. 사전통지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나. 대상유치원

| 유치원명 | 주 소 | 설립·운영자 |
|--------|-------------------------|--------|
| 큰별샘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525-2 | 박*정 |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육과정 미운영(휴원 기간 만료)

- 유치원 건물 및 토지 압류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명령

-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또는 휴원·폐쇄 인가 신청

-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압류 해제

마. 법적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유치원의 설립 등), 제18조(지도·감독),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재산의 관리 및 보호), 「사립학교법」 제51조(준용규정)

바. 의견제출

1) 제출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관리팀

2)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37, 해운대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3) 전화번호: 051-709-0429

4) 모사전송(팩스): 051-709-0309

5) 전자우편: anbo611@korea.kr

6) 제출기한: **2024. 6. 11.(화)**

사. 유의사항

- 1) 귀하는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관리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귀하께서 행정청(해운대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관리팀으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의견제출인 | 성명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
| | 당사자 | 성명(명칭) |
| | | 주소 (전화번호:) |
| | 의견 | |
| 기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